

□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입장 조건

-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의 7호 내지 8호의 ‘반려동물’ 중 의무 등록한 개(내외장 칩 확인)중 ‘국립공원예약시스템’ 으로 사전 예약한 개(이하 ‘반려견’)
-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한 반려견(접종확인서 등)
- 체고(발부터 어깨까지 높이) 40cm 이하 반려견, 단 맹견* 및 40cm 초과하는 중대형견 입장 제한

※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(補助犬) 제외

※ 맹견*: 도사견, 핏불테리어, 로트와일러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및 그 잡종의 개
[동물보호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3]

- 시설 동별 반려견 동반 최대 마리수는 2마리
- 반려견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견주 책임으로 입장에 동의한 경우
- 야영장 및 탐방원 이용 반려견은 지정된 장소(웬스 내)에서만 활동 가능

※ 지정장소 외 모든장소 출입, 활동 절대 불가

※ 입실 및 퇴실로 이동시에는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가방 사용(목줄을 채워 이동 불가)

- 야영장·탐방원 반려견실 이용객 객실변경 불가 및 침구류·수건 미제공

※ 위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, 입장불가 및 「국립공원 예약환불정책」에 따른 환불조치

□ 준수(권고) 사항

- 반려견으로 체류시설(야영장, 탐방원) 내·외부 훼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
 - 반려견의 활동 및 배설물 등에 인한 시설물 피해(얼룩 등)는 견주가 보상
 - 반려견 배변은 반드시 견주 책임하에 수거하며, 애견기저귀(실내착용) 및 배변패드 등을 지참하고, 사용 후에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 처리

※ 위 조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차후 국립공원 시설(야영장, 탐방원 등)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.

※ 국립공원 내 반려동물 출입은 본래 자연공원법에 따라 금지 대상이나,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·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, 위의 조건 및 준수사항 등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.